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

협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의견서 작성서식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정성·정량적인 평가항목을 명기하였습니다.

사 업 개 요

□ 계 획 명 :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

□ 위　　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94-6번지 일원

□ 승인·확정 : 서울특별시(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)

□ 계획규모 : 12,865m^2

□ 계획목적 : 광역버스 이용 활성 및 주변 휴양시설 이용자 안전성 도모

□ 재해저감시설 : 가배수로, 임시침사지 등

종합의견

○ 침투시설 설치계획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(2개소)본 설계 반영하여 저감대책이 필요함

- 주변도로 및 보도 배수계획이 필요함

○

-

○

-

○

-

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
【검토의견】

○ 한강변으로 우기시 배수에 대한 대책필요함

-
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【검토의견】

○ 주변도로 및 보도에 대한 배수계획 필요함

-

3.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

【검토의견】

○ 의견없음

-

4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

【검토의견】

○ 침투시설 설치계획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(2개소)본 설계 반영하여 저감대책이 필요함

5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

【검토의견】

○

-

기타 검토의견

○

○

심의결과

□ 평가서 적정성 검토 [건축분야]

분 야	검토 항목	검토결과	사 유
기초현황 조사	▪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, 재해발생 현황 조사,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, 관련계획 조사 근거 자료 제시	적정	
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	▪ 홍수량 산정 근거 제시(유효우량, 도달시간, 저류상수 등)	적정	
	▪ 토사유출해석 근거 제시(산정 방법·지점, 토양침식량 산정 인자)	적정	
	▪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근거 제시(재해위험도 평가표 등)	적정	
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	▪ 홍수·토사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 및 재해위험 요인별 저감방안 제시 - 협의 내용 이행계획 작성 수록 여부	적정	

① 검토결과 란에 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**"적정", "미흡"**을 구분하여 명기

※ **"적정" :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·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**

"미흡" :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,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,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

② 단, **"미흡"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** 예) 저감대책 부존, 산정 근거 미비 등

□ 심의결과

(원안통과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**모두 "적정"으로 판단되고,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**

(조건부 협의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1개가 "미흡"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거나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**

(재작성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2개 이상이 "미흡"으로 판단되는 경우**

원안통과	조건부 협의	재작성
0		

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

협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의견서 작성서식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정성·정량적인 평가항목을 명기하였습니다.

사 업 개 요

□ 계 획 명 :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

□ 위　　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94-6번지 일원

□ 승인·확정 : 서울특별시(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)

□ 계획규모 : 12,865m^2

□ 계획목적 : 광역버스 이용 활성 및 주변 휴양시설 이용자 안전성 도모

□ 재해저감시설 : 가배수로, 임시침사지 등

종합의견

○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에 의거 재해영향을 예측하고, 저감대책 등을 적절히 제시하였으나, 일부 보완 필요

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
【검토의견】

○인근에 위치한 한강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
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【검토의견】

○의견 없음

3.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

【검토의견】

○2021년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, “4장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”에서는 홍수유출량 증가, 토사유출량 증가,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. 하천, 내수, 토사재해 등은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재해유형으로 “5.3 저감방안 반영”에 수록하여야 함

○p. 4-2 홍수위 상승시 전면 통제되는 지역이라고 기술하였으나, 재해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수정 필요

○또한, 제방고가 EL.14.89~18.38m로 제시하였으나, 하천기본계획 평면도를 살펴보면, 사업 대상구간의 제방고는 EL. 11.33~12.00m 가량으로 낮아 침수피해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대상구간 제방고 재 검토 필요

○p.4-39 [표 4.2-23] 개발전은 30년과 50년, 개발중은 30년, 개발후는 50년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개발중은 50년, 개발후는 30년 빈도 결과 추가 필요

○p.4-44 [표 4.3-2] 소수점 단위가 제시되지 않아 적절하게 산출된 값인지 판단 불가함

○p.4-44, 4-51 [표 4.3-2]와 [표 4.3-10]의 원단위법 결과 상이함.

4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

【검토의견】

○p.5-8 유입관로 및 방류 관로 제원 제시 필요

○한강과 인접하고, 대상지 지반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침수시 피해발생이 예상되나, 현지 여건상 부지성토 등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피경로 안내판, 경보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5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

【검토의견】

○ 일부 목차가 2021년 변경된 지침과 상이하므로 수정 필요

기타 검토의견

○p.2-5 개발후 배수관로 및 유수흐름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현 필요

심의결과

□ 평가서 적정성 검토 [수자원분야]

분 야	검토 항목	검토결과	사 유
기초현황 조사	▪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, 재해발생 현황 조사,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, 관련계획 조사 근거 자료 제시	적정	
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	▪ 홍수량 산정 근거 제시(유효우량, 도달시간, 저류상수 등)	적정	
	▪ 토사유출해석 근거 제시(산정 방법·지점, 토양침식량 산정 인자)	적정	
	▪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근거 제시(재해위험도 평가표 등)	적정	
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	▪ 홍수·토사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 및 재해위험 요인별 저감방안 제시 - 협의 내용 이행계획 작성 수록 여부	미흡	하천재해 저감방안 제시 필요

① 검토결과 란에 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**"적정", "미흡"**을 구분하여 명기

※ **"적정" :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·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**

"미흡" :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,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,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

② 단, **"미흡"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** 예) 저감대책 부존, 산정 근거 미비 등

□ 심의결과

(원안통과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**모두 "적정"으로 판단되고,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**

(조건부 협의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1개가 “미흡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거나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**

(재작성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2개 이상이 “미흡”으로 판단되는 경우**

원안통과	조건부 협의	재작성
	○	

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

협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의견서 작성서식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정성·정량적인 평가항목을 명기하였습니다.

사 업 개 요

□ 계 획 명 :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

□ 위　　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94-6번지 일원

□ 승인·확정 : 서울특별시(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)

□ 계획규모 : 12,865m^2

□ 계획목적 : 광역버스 이용 활성 및 주변 휴양시설 이용자 안전성 도모

□ 재해저감시설 : 가배수로, 임시침사지 등

종합의견

○ 대상 사업지의 침수 위험 검토 필요

-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영향도 중요하지만, 사업지 자체의 침수 위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, 필요한 대책 수립이 요구됨. 주변 한강 등의 계획홍수위를 고려한 계획부지고 설정이 필요함

- 개발 중 증가하는 홍수량을 저감하기 위해 침투시설을 계획하였음. 개발 중 침투시설 관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임. 차라리 임시침사지를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로 계획하여 증가된 유출량을 처리하는 계획에 대한 검토를 기대함

○ 개발 중 토사유출량의 발생이 예상됨

- 이로 인한 주변 피해 감소를 위해 임시침사지 설치를 계획함

- 적정한 용량의 침사지를 계획하고, 공사 중 가배수로 등의 유지관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

○ 개발 후 증가하는 유출량 저감대책으로 침투시설을 계획하였음. 침투시설의 용량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임.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방안 수립이 필요함

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
【검토의견】

○

-
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【검토의견】

○

-

3.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

【검토의견】

○

-

4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

【검토의견】

○

-

5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

【검토의견】

○

-

기타 검토의견

○

○

심의결과

□ 평가서 적정성 검토 [상하수도분야]

분 야	검토 항목	검토결과	사 유
기초현황 조사	▪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, 재해발생 현황 조사,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, 관련계획 조사 근거 자료 제시	적정	
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	▪ 홍수량 산정 근거 제시(유효우량, 도달시간, 저류상수 등)	적정	
	▪ 토사유출해석 근거 제시(산정 방법·지점, 토양침식량 산정 인자)	적정	
	▪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근거 제시(재해위험도 평가표 등)	적정	
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	▪ 홍수·토사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 및 재해위험 요인별 저감방안 제시 - 협의 내용 이행계획 작성 수록 여부	적정	

① 검토결과 란에 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**"적정", "미흡"**을 구분하여 명기

※ **"적정" :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·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**

"미흡" :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,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,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

② 단, **"미흡"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** 예) 저감대책 부존, 산정 근거 미비 등

□ 심의결과

(원안통과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**모두 "적정"으로 판단되고,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**

(조건부 협의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1개가 "미흡"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거나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**

(재작성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2개 이상이 "미흡"으로 판단되는 경우**

원안통과	조건부 협의	재작성
○		

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

협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의견서 작성서식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정성·정량적인 평가항목을 명기하였습니다.

사 업 개 요

□ 계 획 명 :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

□ 위　　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94-6번지 일원

□ 승인·확정 : 서울특별시(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)

□ 계획규모 : 12,865m^2

□ 계획목적 : 광역버스 이용 활성 및 주변 휴양시설 이용자 안전성 도모

□ 재해저감시설 : 가배수로, 임시침사지 등

종합의견

○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

– 하천범람 또는 내수침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북동측으로 약 220m 떨어진곳에 한강이 위치하고있어 사업대상지의 표고는 올림픽대로와 같은 표고로 한강수위보다 높은지역 으로 하천재해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.

○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

– 사업지가 올림픽대로와 접하고있어 사면재해는 발생하지 않음.

– 토사재해는 터파기 공사중 토사유출량 증가가 예측되나 소량으로 발생되어 공사장 주변하류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측됨.

○ 지반재해 및 지진피해

–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는 사업구역의 연약지반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없음.

○ 바람재해

- 강풍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.

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
【검토의견】

○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

- 계획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94-6번지 일원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설치시설은 올림픽대로와 접속하는 구간으로 한강 홍수위보다 낮으나 홍수시는 임시대피로가 필요함.
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【검토의견】

○ 해당사업시행으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- 계획대상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94-6번지 일원으로 공사중 주변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은 적을것으로 예측되나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신설공사시 토공사(부지정지) 및 아스콘포장공사 사업 이므로 공사중 토사유출방지시설등이 필요함.

3.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

【검토의견】

○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는

- 금회 계획에 따라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재해의 유형으로 하천 및 내수, 토사, 지반 및 지진, 바람재해등에 대하여 검토
- 예측결과 계획사업 영등포구 당산동 94-6번지 일원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공사시 토공사 및 아스팔트포장공사 위주의 공사이므로 주변영향은 없을것으로 판단됨.

4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

【검토의견】

○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은

- 토사유출 방지계획(임시침사지2개소)는 공사장내에 가배수로의 오염수를 1차,2차 정재된 우수만 기존배수로 배출토록 설계보완이 필요함,

5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

【검토의견】

○적정함.

기타 검토의견

○ 계획대상지 와 올림픽대로와 접속되는 공사로 공사중 홍수시 토공사 및 포장공사시 임시대피로가 필요함.

○ 우기시 배수계획은 인근 기존측구 배수시설에 배수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사중 배수로 정비가 필요함.

심의결과

□ 평가서 적정성 검토 [토목시공분야]

분 야	검토 항목	검토결과	사 유
기초현황 조사	▪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, 재해발생 현황 조사,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, 관련계획 조사 근거 자료 제시	적정	
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	▪ 홍수량 산정 근거 제시(유효우량, 도달시간, 저류상수 등)	적정	
	▪ 토사유출해석 근거 제시(산정 방법·지점, 토양침식량 산정 인자)	적정	
	▪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근거 제시(재해위험도 평가표 등)	적정	
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	▪ 홍수·토사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 및 재해위험 요인별 저감방안 제시 - 협의 내용 이행계획 작성 수록 여부	적정	

① 검토결과 란에 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**"적정", "미흡"**을 구분하여 명기

※ **"적정" :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·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**

"미흡" :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,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,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

② 단, **"미흡"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** 예) 저감대책 부존, 산정 근거 미비 등

□ 심의결과

(원안통과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**모두 "적정"으로 판단되고,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**

(조건부 협의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1개가 "미흡"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거나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**

(재작성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2개 이상이 "미흡"으로 판단되는 경우**

원안통과	조건부 협의	재작성
○		

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

협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의견서 작성서식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정성·정량적인 평가항목을 명기하였습니다.

사 업 개 요

□ 계 획 명 :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

□ 위　　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94-6번지 일원

□ 승인·확정 : 서울특별시(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)

□ 계획규모 : 12,865m^2

□ 계획목적 : 광역버스 이용 활성 및 주변 휴양시설 이용자 안전성 도모

□ 재해저감시설 : 가배수로, 임시침사지 등

종합의견

○ 공사시 올림픽대로 구간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재해요인 파악 및 저감대책 제시

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
【검토의견】

○의견없음

-
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【검토의견】

○의견없음

-

3.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

【검토의견】

○의견없음

-

4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

【검토의견】

○의견없음

-

5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

【검토의견】

○의견없음

-

기타 검토의견

○ 공사시 올림픽대로 구간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재해요인 파악 및 저감대책 제시

심의결과

□ 평가서 적정성 검토 [도로교통분야]

분 야	검토 항목	검토결과	사 유
기초현황 조사	▪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, 재해발생 현황 조사,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, 관련계획 조사 근거 자료 제시	적정	
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	▪ 홍수량 산정 근거 제시(유효우량, 도달시간, 저류상수 등)	적정	
	▪ 토사유출해석 근거 제시(산정 방법·지점, 토양침식량 산정 인자)	적정	
	▪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근거 제시(재해위험도 평가표 등)	적정	
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	▪ 홍수·토사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 및 재해위험 요인별 저감방안 제시 - 협의 내용 이행계획 작성 수록 여부	적정	

① 검토결과 란에 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**"적정", "미흡"**을 구분하여 명기

※ **"적정" :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·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**

"미흡" :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,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,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

② 단, **"미흡"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** 예) 저감대책 부존, 산정 근거 미비 등

□ 심의결과

(원안통과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**모두 "적정"으로 판단되고,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**

(조건부 협의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1개가 "미흡"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거나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**

(재작성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2개 이상이 "미흡"으로 판단되는 경우**

원안통과	조건부 협의	재작성
	○	